

의안번호	2214251
의 퇴 인	김영배의원
회 답 일	2026.1.5.
추계번호	25D6184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추진실적 평가, 중앙 및 시·도별 사회연대경제 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 사회연대경제의 날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9억 2,0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54억 7,100만원(연평균 10억 9,4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평균
기본계획 수립 (안 제8조)	177	—	—	—	191	368	74
시·도 지역별 기본계획 수립 (안 제10조)	1,254	—	—	—	1,357	2,611	522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 (안 제13조)	61	63	64	65	67	320	64
사회연대경제 발전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6조)	15	15	15	15	15	75	15
지역 사회연대경제 발전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9조)	255	255	255	255	255	1,275	255
사회연대경제의 날 행사 (안 제42조)	158	161	164	168	171	822	164
합 계	1,920	494	498	503	2,056	5,471	1,094

주: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만을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추가 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조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사회연대경제 발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4년마다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함	의무규정

2	안 제9조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시행계획 의 수립)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 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3	안 제10조 (시·도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의 수립)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해당 시·도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과 지속가능한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하여 4년을 단위로 시·도 지역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도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의무규정
4	안 제11조(시· 군·구 지역별 기 본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의 수 립)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군·구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과 지속가능한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하여 4년을 단위로 하는 시·군·구 지역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군·구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의무규정
5	안 제13조(시행 계획 및 추진실 적의 평가)	-사회연대경제 발전위원회는 부문별 시행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 등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연대경제 발전사업 평가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평가업무 지원을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사회연대경제 발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은 부문별, 시·도별 실적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해당 조직에 혜택을 부여하거나 포상을 실시할 수 있음	재량규정
6	안 제16조(사회 연대경제 발전위 원회)	-사회연대경제 발전과 관련한 국가정책과 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연대경제 발전위원회를 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실무위원회와 사무지원조직을 둘 수 있음 -위원회의 사무처 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사회연대경제 정책국을 두며,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는 사회연대경제과를 둘 수 있음	의무규정
7	안 제19조(지역 사회연대경제 발 전위원회)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고 지역차원의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연대경제 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음	재량규정
8	안 제22조 (사회연대경제 통계조사 및 실 태조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의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의무규정
9	안 제23조(사회 연대경제 연대조 직의 설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연대조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10	안 제24조(한국사회연대경제원의 설립 등)	-사회연대경제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연대경제 관련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연대경제원을 설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제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함	재량규정
11	안 제25조(지역별 사회연대경제 지원센터 지정)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지역별 사회연대경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정부는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음	의무규정
12	안 제27조(사회연대금융기관의 설립과 육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연대금융을 조달하기 위한 전달체계로서 민간 사회연대금융기관을 지정·육성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 편의 및 세제상의 혜택 제공, 자금의 출연 등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3	안 제28조(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 육성)	-정부는 투·융자 대상 사회경제적 조직의 발굴, 금융상품 개발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을 육성할 수 있음	재량규정
14	안 제29조(사회연대경제 발전기금의 지정 및 운영) 및 안 제31조(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운용심의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발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사회연대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사회연대경제 발전기금을 지정해야 함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운용심의회를 둠	재량규정
15	안 제32조(민간기금의 조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금에 출연하거나 기부하는 기업·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 편의와 세제상의 감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16	안 제36조(시설비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유·공유재산 및 물품을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7	안 제37조(조세감면 및 재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금융 기관에 기부·출연하거나 투자하는 일반의 기업·법인·단체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음	재량규정
18	안 제38조(교육·훈련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사회연대경제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재량규정
19	안 제40조(사회연대경제 조직 간 협력과 연대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조직 간 협력 체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제휴활동 및 연대조직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세제, 재정, 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20	안 제42조(사회연대경제의 날)	-국가는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사회연대경제의 날로 지정하며, 사회연대경제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홍보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재량규정
21	안 제43조(국제협력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과 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8조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	
2	안 제9조 (중앙행정기관의 부문 별 시행계획의 수립)	-	미대상: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본 조직 및 예산을 활용하여 사업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3	안 제10조 (시·도 지역별 기본계 획의 수립과 시행계획 의 수립)	○	
4	안 제11조(시·군·구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의 수립)	×	각 시·군·구별로 사업계획 및 규모가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어 합리적인 추정이 곤란함
5	안 제13조(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	
6	안 제16조(사회연대 경제 발전위원회)	○	
7	안 제19조(지역 사회 연대경제 발전위원회)	○	
8	안 제22조 (사회연대경제 통계 조사 및 실태조사)	×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사업 범위 추정이 곤란함

9	안 제23조(사회연대경제 연대조직의 설립)	×	사회연대경제 연대조직의 사업 범위 등을 현 시점에서 예상하기 어려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규모를 추정하기 곤란함
10	안 제24조(한국사회연대경제원의 설립 등)	×	한국사회연대경제원 설립·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출연금 규모 추정이 곤란함
11	안 제25조(지역별 사회연대경제 지원센터 지정)	×	사회연대경제센터의 사업 범위 및 조직 규모 등을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워 지원 예산을 추정하기 곤란함
12	안 제27조(사회연대금융기관의 설립과 육성)	×	사회연대금융기관에 대한 재정지원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소요 예산 추정이 곤란함
13	안 제28조(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 육성)	×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 사업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소요 예산 추정이 곤란함
14	안 제29조(사회연대경제 발전기금의 지정 및 운영) 및 안 제31조(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운용심의회)	×	기금 운영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 정부 출연금 규모 추정이 곤란하고,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소요 예산 추정이 곤란함
15	안 제32조(민간기금의 조성)	×	구체적 사업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16	안 제36조(시설비 등의 지원)	×	사회연대경제조직에게 지원되는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의 규모를 현 시점에서 추정하기 곤란함
17	안 제37조(조세감면 및 재정 지원)	×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범위, 감면율 등을 현 시점에서 추정하기 곤란함
18	안 제38조 (교육·훈련 등 지원)	×	구체적 사업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19	안 제40조(사회연대경제 조직 간 협력과 연대 촉진)	×	구체적 사업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20	안 제42조(사회연대경제의 날)	○	
21	안 제43조(국제협력 등)	×	구체적 사업 규모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제8조에 따른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은 행정안전부에서 수립한 기본계획 수립 평균 예산을 준용함
 - 기본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계 첫해인 2027년과 2031년에 수립한다고 가정
- 안 제10조에 따른 시·도 지역별 기본계획은 부산광역시에서 수립한 유사 기본계획 예산을 준용함
 - 지역별 기본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계 첫해인 2027년과 2031년에 수립한다고 가정
- 안 제16조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는 사회연대경제 발전위원회의 전체 위원 수는 30명으로 가정하고, 이 중 민간위원은 15명으로 가정함
 - 연 4회 회의를 개최하며, 회의참석 및 안전검토수당은 회당 25만원¹⁾으로 가정
 - 회의참석 및 안전검토수당은 추계기간 동안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
- 안 제19조에 따라 설치되는 지역 사회연대경제 발전위원회는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것으로 하되, 전체 위원 수는 30명으로 가정하고, 이 중 민간위원은 15명으로 가정함
 - 연 4회 회의를 개최하며, 회의참석 및 안전검토수당은 회당 25만원으로 가정
 - 회의참석 및 안전검토수당은 추계기간 동안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
- 안 제42조에 따른 사회연대경제의 날 행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유사 사례의 평균예산을 준용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²⁾를 적용함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부칙과 법안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1)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만원을 지급하되,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만원을 추가 편성할 수 있으며 여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검토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2025년 11월 기준, 단위: %)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소비자물가상승률(CPI)	2.0	1.9	2.0	2.0	2.0	2.0	2.0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기본계획 수립(안 제8조)

□ 안 제8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억 7,700만원, 2031년 1억 9,100만원으로 추계됨

- 추계의 전제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최근 5건) 예산 평균금액³⁾을 준용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
- 추계의 전제에 따라 2027년과 2031년에 비용이 발생

[표 2]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기본계획 수립 (안 제8조)	177	-	-	-	191	36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시·도 지역별 기본계획 수립(안 제10조)

□ 안 제10조에 따라 17개 시·도에서 지역별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7년 12억 5,400만원, 2031년 13억 5,700만원으로 추계됨

- 추계의 전제에 따라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한 ‘제2차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2023년) 예산 68백만원을 준용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
- 추계의 전제에 따라 2027년과 2031년에 비용이 발생

[표 3] 시·도 지역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시·도 지역별 기본계획 수립 (안 제10조)	기본계획 수립(a)	73.7	-	-	-	79.8	-
	시·도(b)	17	-	-	-	17	-
	합계(a×b)	1,254	-	-	-	1,357	2,61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행정안전부의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자료: prism.go.kr)

- 2021년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190백만원), 2022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327백만원), 2022년 온천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98백만원), 2023년 재난안전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137백만원), 2023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65백만원)
- 연구용역 예산 평균금액을 2023년 발생금액으로 가정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다.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안 제13조)

□ 제정안에 따라 사회연대경제 발전위원회에서 부문별, 시·도별 시행계획 등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6,100만원 등 향후 5년간 3억 2,000만원으로 추계됨

-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에 따른 소요예산은 유사사례인 ‘사회보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연구용역비 평균액(58백만원)⁴⁾으로 하고 추계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

[표 4]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 (안 제13조)	61	63	64	65	67	3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사회연대경제 발전위원회 구성(안 제16조)

□ 안 제16조에 따라 설치되는 사회연대경제 발전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500만원 등 5년간 총 7,500만원으로 추계됨

- 추계의 전제에 따라 15명의 위촉위원에게 회당 25만원의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연 4회 회의를 한다고 가정
 - (연간 소요) 민간위원 15인 × 25만원 × 연 4회 = 1,500만원

[표 5] 사회연대경제 발전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사회연대경제 발전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6조)	15	15	15	15	15	7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집행액: 2024년 60백만원, 2023년 60백만원, 2022년 54백만원(자료: prism.go.kr)

마. 지역 사회연대경제 발전위원회 구성(안 제19조)

□ 안 제19조에 따라 설치되는 지역 사회연대경제 발전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억 5,500만원 등 5년간 총 12억 7,500만원으로 추계됨

○ 제정안은 지역 사회연대경제 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안 제16조의 사회연대경제 발전위원회와 동일하게 1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17개 시·도에 설치되는 것으로 가정

○ 추계의 전제에 따라 15명의 위촉위원에게 회당 25만원의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연 4회 회의를 한다고 가정

－ (연간 소요) 민간위원 15인 × 25만원 × 연 4회 × 17개 시·도 = 2억 5,500만원

[표 6] 지역 사회연대경제 발전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지역 사회연대경제 발전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9조)	255	255	255	255	255	1,27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바. 사회연대경제의 날 행사 실시(안 제42조)

□ 행사 및 홍보사업 소요 비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주요 행사 및 홍보사업 등 예산 평균금액(152백만원)을 준용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

[표 7] 행정안전부 실시 유사 사례 평균 비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	주요 내용
국민안전의 날	131	국민안전의 날 및 안전주간 운영, 안전문화대상 시상식 개최
승강기 안전주간	144	승강기 안전주간 행사, 승강기 안전교육
기록의 날	86	기념행사 및 기록사랑 공모전
자전거의 날	245	기념식, 안전체험교실 운영, 경진대회

자료: 행정안전부 2025년 예산 사업설명자료에서 발췌

- 안 제42조에 따라 사회연대경제의 날 행사를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억 5,800만원 등 총 8억 2,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8] 사회연대경제의 날 행사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사회연대경제의 날 행사 (안 제42조)	158	161	164	168	171	82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사. 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9억 2,0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54억 7,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9]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기본계획 수립 (안 제8조)	177	—	—	—	191	368
시·도 지역별 기본계획 수립 (안 제10조)	1,254	—	—	—	1,357	2,611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 (안 제13조)	61	63	64	65	67	320
사회연대경제 발전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6조)	15	15	15	15	15	75
지역 사회연대경제 발전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9조)	255	255	255	255	255	1,275
사회연대경제의 날 행사 (안 제42조)	158	161	164	168	171	822
합 계	1,920	494	498	503	2,056	5,47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만을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임홍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홍연	02-6788-4673	limhy@nabo.go.kr